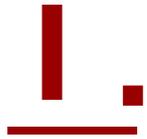


특별투자계약 (SPIC 2.0)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목 차

- I. 법무법인(유) 지평 소개
- II. 모스크바 사무소 및 러시아 · 중앙아시아팀 소개
- III. 특별투자계약 입법배경 및 연혁
- IV. 특별투자계약 2.0의 개념 및 정의
- V. 특별투자계약 2.0 주요 조건 및 1.0과의 차이
- VI. 관련 입법 동향
- VII. 업무 Track Record



법무법인(유) 지평 소개

I. 법무법인(유) 지평 소개

아시아 대표 명문 로펌 -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은 2000년에 설립된 한국의 leading law firm으로 현재 220여 명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으로, 사람중심의 정신과 진정성에 입각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적 해결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종합 법률서비스 제공
(소송, M&A, 금융 증권, 해외투자, 건설 부동산 등)

구성원

219명 (한국변호사 164명, 외국변호사 35명, 공인회계사 5명, 기타전문가 15명)

사무소

국내/해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우)03740

- **국내** 서울 | 순천 | 부산
- **해외**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I. 법무법인(유) 지평 소개 - 비전과 가치

Vision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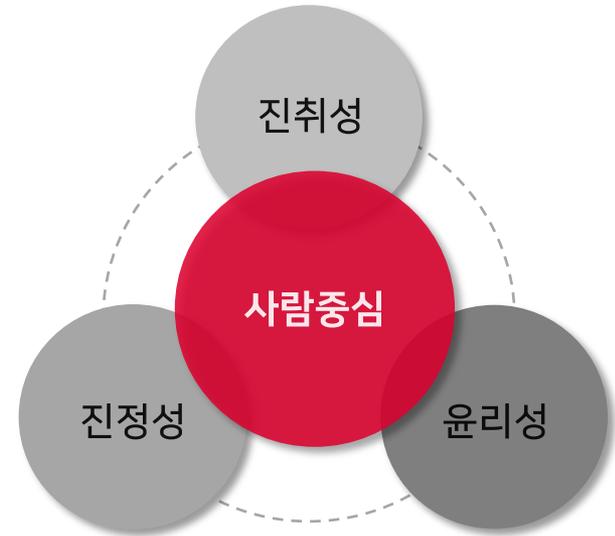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Values 가치



I. 법무법인(유) 지평 소개 - 해외업무

해외업무그룹

해외직접투자, 합작투자

M&A

Project Finance

건설 · 부동산

자원 · 에너지 ·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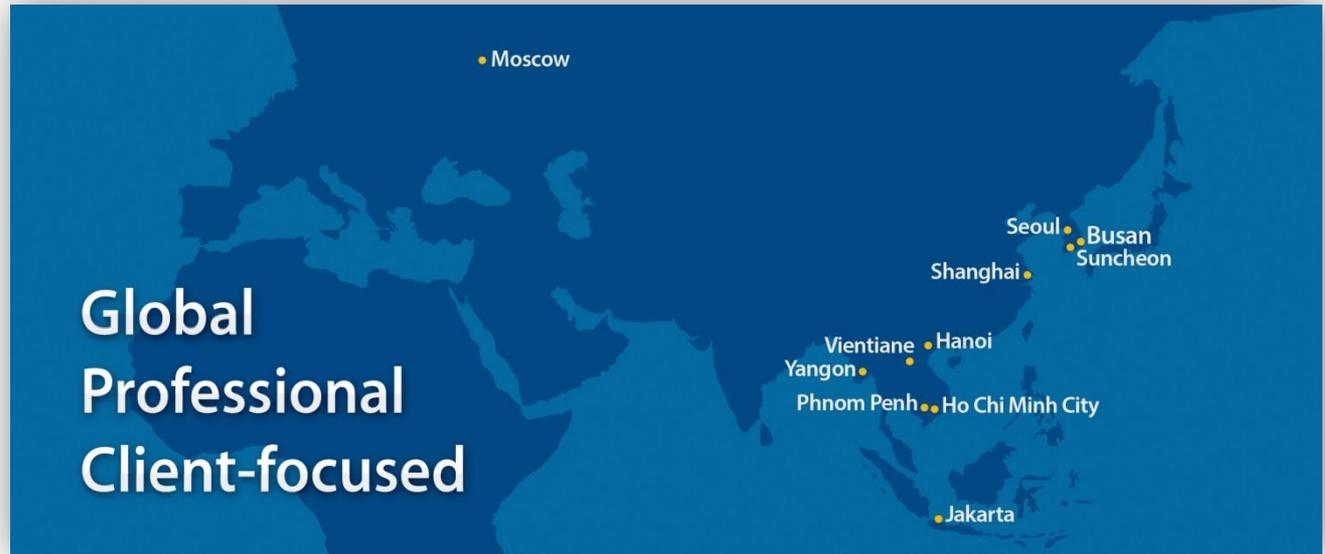
지적재산권

노동

조세

자본시장

소송 및 중재



서울 본사의
업무전문성

해외사무소의
지역전문성

국제적
One-Stop
법률서비스 제공

I. 법무법인(유) 지평 소개 - 해외사무소



- **주사무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우)03740
- **순천 사무소**
전남 순천시 왕지로 24 금강타워 3층 (우)57932
- **부산 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새알로 19-3, 2층 (우)47507
- **중국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 **베트남 호치민시 사무소**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 Ward 6, Dist. 3
Ho Chi Minh City, Vietnam
-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Suite 3505, 35F,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Plot E6
Cau Giay New Urban Area, Me Tri Ward, Nam Tu Liem Dist., Hanoi,
Vietnam
-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9F, Prince Phnom Penh Tower, #445, Monivong Blvd. (St.93/232)
Sangkat Boeung Pralit, Khan 7 Makara, Phnom Penh, Cambodia
- **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 Vientiane, Laos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Gedung Artha Graha 23F, Jalan Jenderal Sudirman Kav. 52-53, Lot 25,
Jakarta Selatan 12190, Indonesia
- **미얀마 양곤 사무소**
No. 140/A, Than Lwin Road, Bahan Township, Yangon, Myanmar
-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119002, 43, Sivtsev Vrazhek Lane, Moscow, Russia



모스크바 사무소 및 러시아 · 중앙아시아팀 소개

법무법인(유) 지평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설립

법무법인(유) 지평은 2015년 4월 러시아 로펌 YUST와 제휴하여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한국 로펌 중 해외사무소가 가장 많은 지평은 중국 및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8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유라시아 지역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리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평과 제휴한 YUST는 1992년에 설립된 러시아 순수 현지 로펌으로 60여 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러시아 고객 및 외국계 고객에 대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지평은 YUST와 협력하여 러시아·중앙아시아 현지와 한국에서 동시에 유기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대 모스크바 사무소장으로 파견된 이승민 외국변호사(러시아)는 러시아 명문인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MGIMO)에서 학부부터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후 지평에서 10년 동안 러시아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러시아 전문가입니다.

지평은 2005년에 국내 법무법인 최초로 러시아·중앙아시아 팀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약 250여 건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팀은 이승민 외국변호사(러시아)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류혜정 변호사(연수원 34기),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에서 금융(조세)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변호사 최초로 러시아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한 채희석 변호사(연수원 32기)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M&A, 금융, 회사, SOC, FDI, 조세 등 산업별 전문성을 보유하면서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에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설립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류혜정 | 파트너변호사(팀장)

T. +82 2 6200 1722 E. hjryu@jipyong.com

채희석 | 파트너변호사

T. +82 2 6200 1757 E. hschai@jipyong.com

이승민 | 시니어 외국변호사(러시아·CIS 총괄대표)

T. +7 495 795 3268 E. smlee@jipyong.com

+82 2 6200 1772



법무법인(유) 지평 러시아 · 중앙아시아팀

법무법인(유) 지평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 및 몽골에 대한 법률자문 업무로 특화된 러시아 · 중앙아시아팀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러시아 · 중앙아시아팀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류혜정 변호사의 영입을 계기로 2005년에 구성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에서 국제환경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승민 외국변호사(러시아)를 영입하여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러시아 · 중앙아시아 지역(및 몽골)에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채희석 변호사가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에서 금융(조세)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변호사 최초로 러시아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M&A, 금융, 회사, SOC, FDI, 조세 등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하면서 러시아 · 중앙아시아 지역에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법인(유) 지평은 2015년 4월 러시아 현지 명문 로펌인 YUST와 제휴하여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지평과 제휴한 YUST는 1992년에 설립된 러시아 순수 현지 로펌으로, 60여 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러시아 고객 및 외국계 고객에 대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지평은 YUST와 협력하여 러시아 · 중앙아시아 현지와 한국에서 동시에 유기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러시아 · 중앙아시아팀

현지 네트워크

법무법인(유) 지평은 각 지역별로 인터내셔널 로펌, 로컬 로펌, 회계법인, 기술자문회사, 컨설팅회사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과 긴밀한 업무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러시아 · 중앙아시아팀 구성 이래 현재까지 약 200건 이상의 법률자문을 수행하면서 고객의 수요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투자계약 입법배경 및 연혁

입법배경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도입/개발

III. 특별투자계약 입법배경 및 연혁

연혁

- 2014.12.31. 러시아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제488-FZ호) 제정 (이하 "SPIC 1.0")
- 2019.04.16. 개정법률안 패키지 러시아 하원 상정 (이하 "SPIC 2.0")
- 2019.07.24. 법안 하원 통과
- 2019.07.26. 법안 상원 통과
- 2019.08.02. SPIC 제도 변경에 관한 법률 패키지 대통령 최종 서명
- 2019.08.13. 러시아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을 포함한 관련 법률 시행

IV.

특별투자계약 2.0의 개념 및 정의

IV. 특별투자계약 2.0의 개념 및 정의

특별투자계약 2.0 (이하 "SPIC 2.0")

(1) 정의

투자자는 특별투자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 자기자본 및/또는 조달자금을 투자하여, 러시아 영토,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법률로 정한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제품의 생산 개발 목적 하에 기술유치 또는 기술개발·기술유치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의무를 부담하고, 러시아연방, 러시아주,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특별투자계약 기간 내 자신들의 권한 범위 내에서 투자자의 경영 환경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러시아연방법률, 주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특별투자계약에서 정한 산업 분야에서 투자자에 대한 영업활동 장려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하는 계약

특별투자계약 2.0 (이하 "SPIC 2.0")

(2) 체결조건

- ✓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제품 생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기술 개발 및/또는 도입 계획
- ✓ 관련 법령 요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보유
- ✓ SPIC 장려대책을 위한 러시아 연방정부의 총 예산비용을 상회하는 투자액

V.

특별투자계약 2.0 주요 조건 및 1.0과의 차이

V. 특별투자계약 2.0 주요 조건 및 1.0과의 차이



적용절차

SPIC 1.0

- 2019.08.13 이전에 체결된 SPIC 1.0은 해당 계약 종료 시까지 유효
- SPIC 1.0의 변경/해지는 SPIC 1.0 체결 당시의 시행되었던 절차 및 요건 적용

SPIC 2.0

- 2019.08.13 이후 체결되는 SPIC 계약은 SPIC 2.0 절차 및 요건 적용



체결시기

SPIC 1.0

- 2019.08.13 이전까지 체결 가능

SPIC 2.0

- 2019.08.13 이후부터 2030.12.31 체결 가능

V. 특별투자계약 2.0 주요 조건 및 1.0과의 차이



당사자
(공공주체)

SPIC 1.0

- 연방정부 및/또는 주정부 및/또는 지방자치단체

SPIC 2.0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동



당사자
(민간주체)

SPIC 1.0

- 투자자(1인 투자자만 참여 허용)
- 투자자에 의해 유치된 제3자(공학센터, 유통업자, 금융센터 등)

SPIC 2.0

- 1인 또는 다수의 투자자
- 투자자에 의한 제3자 유치 가능 여부 미규정

V. 특별투자계약 2.0 주요 조건 및 1.0과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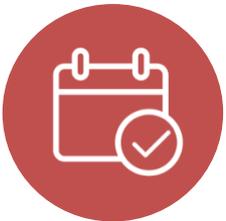
최소투자액

SPIC 1.0

- 7억 5천만 루블 이상(VAT 미포함)

SPIC 2.0

- 없음



계약기간

SPIC 1.0

- 최대 10년

SPIC 2.0

- 최대 15년(500억 루블[VAT 미포함] 이하 투자 시)
- 최대 20년(500억 루블[VAT 미포함] 초과 투자 시)

V. 특별투자계약 2.0 주요 조건 및 1.0과의 차이



제안주체

SPIC 1.0

- 입찰 제안 주체 - 투자자

SPIC 2.0

- 입찰 제안 주체
- 러시아 연방
- 러시아연방, 주(州), 지방자치단체 공동
- 투자자
 - ✓ 투자자 제안에 따라 입찰이 진행되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주(州)와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장소에 대한 합의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서를 러시아연방 주무부처에 제출 함. 이때 해당 제안에는 프로젝트 추진 시 러시아 연방에 귀속되는 지적재산권 및 도입되는 지적재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 ✓ 투자자 제안에 대해 러시아연방 주무부처는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 입찰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거나 기각 결정을 내림.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서 수령일 또는 입찰 종료일 또는 수의방식에 의한 SPIC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법원에 의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러시아연방 주무부처는 다시 입찰절차를 진행해야 함.

V. 특별투자계약 2.0 주요 조건 및 1.0과의 차이



체결절차

SPIC 1.0

- 투자자 투자신청/제안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원칙

SPIC 2.0

① 공개/비공개 입찰 원칙

(프로젝트가 군사, 특수/이중 목적의 기술 도입/개발과 연관된 경우 비공개 입찰 진행)

② 공개/비공개 입찰 결과 1인 또는 다수의 투자자 선정 가능

✓ 선정 기준

- i) 최신기술 도입 기간 ii) SPIC 효력기간 내 생산되는 제품규모(수량),
- iii) 최신기술목록에 반영된 기술을 이용한 산업제품 생산 기술 현지화율

- ✓ 입찰 참여 전 입찰 참여자는 입찰 신청서 제출 전까지 러시아 연방 주(州) 및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장소에 대한 협의를 하고 합의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함.

V. 특별투자계약 2.0 주요 조건 및 1.0과의 차이



수의계약

SPIC 1.0

- 투자자 투자신청/제안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원칙

SPIC 2.0

- 공개/비공개 입찰 원칙, 단 일정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함.
 - ✓ 러시아연방 대통령 결의 (러시아 경제발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 프로젝트 추진 필요 목적 하에 투자자 제안에 의하여)
 - ✓ 입찰 진행 시 법률, 법령, 입찰 문서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는 참가자가 1인인 경우

V. 특별투자계약 2.0 주요 조건 및 1.0과의 차이



SPIC 체결 제한 요건

SPIC 1.0

- ✓ 법률에 규정된 바 없음

SPIC 2.0

- 다음의 경우 SPIC 체결은 허용되지 않음
 - ✓ 해당 기술이 최신기술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프로젝트가 러시아연방 법률 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 SPIC 에 계획된 자금투자규모가 SPIC 투자장려대책 시행으로 인해 러시아연방 예산 지출 및 미확보 세수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V. 특별투자계약 2.0 주요 조건 및 1.0과의 차이



투자자 의무&책임

SPIC 2.0

① 투자자 주요 의무

- ✓ SPIC에서 정한 일정에 따른 그리고 SPIC에서 정한 규모의 투자
- ✓ 최신기술목록에 포함된 기술 중에서 기술을 개발, 기술을 도입 또는 신기술목록에 포함된 지적재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거나 사용권을 확보
- ✓ SPIC 체결일 기준 산업제품 생산을 위해 최신기술목록에 포함된 기술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거나 사용권을 확보
- ✓ SPIC 입찰 신청서 또는 제안서에 명시한 신기술을 이용한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 ✓ SPIC에서 정한 목표지표 도달
- ✓ SPIC에 따른 개별 수입지출 회계처리

② 투자자 책임

- ✓ SPIC에서 정한 일정에 따른 i) 투자액이 50% 이하이거나 ii) SPIC 입찰 신청서 또는 제안서에 명시한 신기술을 이용한 생산량 의무 iii) SPIC에서 정한 목표지표 도달 의무 iv) SPIC에 따른 개별 수입지출 회계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러시아 정부, 주(州), 지방자치단체 청구에 따라 SPIC에 명시된 벌금을 절차에 따라 지급해야 함.
- ✓ SPIC에서 정한 일정에 따른 i) 투자액이 50% 이상이거나 ii) 최신기술목록에 포함된 기술 중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할 의무 iii) 최신기술목록에 포함된 지적재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거나 사용권을 확보할 의무, iv) SPIC 체결일 기준 산업제품 생산을 위해 최신기술목록에 포함된 기술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러시아 정부, 주(州), 지방자치단체는 SPIC 이행을 임의로 거절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법원소제기 없이 청구할 수 있음.

V. 특별투자계약 2.0 주요 조건 및 1.0과의 차이



기타

SPIC 1.0

- ① 일정 수준의 생산량
- ② 일정 수준의 세금/기타 필수 납부금 납부
- ③ 일정 수준의 일자리 창출
- ④ 글로벌경쟁력지수 달성

SPIC 2.0

- ① SPIC 체결일 현재 외국정부에 의해 투자자가 러시아 정부가 정한 제재유형 리스트에 명시된 일방적 제재를 받는 경우, 러시아연방정부 결정에 따라 제재 기간만큼 SPIC 기간 연장될 수 있음.
- ② SPIC의 체결, 변경, 해지, 종료에 관한 사항은 SPIC관리명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등록됨.
- ③ SPIC 이행에 대한 감독은 러시아연방 및 주 정부 주무부처가 실시하며, 서면 조사 및 현장조사 통해 SPIC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함. 한편, 해당 주무부처는 매년 러시아 연방정부에 투자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V. 특별투자계약 2.0 주요 조건 및 1.0과의 차이



세제혜택

SPIC 1.0

- ① SPIC에 명시된 세제혜택에 한해 조세법 예외규정 적용(2019.01.01.부)
- ② SPIC 에 따른 제품 매출액 총액이 법인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인 경우
 - ✓ 이상 달성 시 연방정부 귀속 법인세 세율 0% 적용
 - ✓ 주정부 귀속 법인세 세율 최대 0%까지 인하 가능
- ③ 2025년까지 세제혜택 제공
- ④ 복수세제혜택에 대한 제한 無

SPIC 2.0

- ① 투자자를 위한 세제혜택 유지
- ② 법인세 감면
 - ✓ SPIC 에 따른 제품 매출액 총액이 법인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인 경우
 - ✓ SPIC 에 따른 제품 매출액 총액이 법인 전체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로서 단, 감면액이 전체투자금액의 25%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개별 수입지출 회계처리 시
 - 연방정부 귀속 법인세 세율 0% 적용
 - 주정부 귀속 법인세 세율 최대 0%까지 인하 가능
 - ✓ 2025년까지로 제한된 세제혜택 기간 폐지되나, SPIC 투자장려대책 시행으로 인해 러시아연방 예산 지출 및 미확보 세수의 총액이 SPIC 명시된 자금투자규모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일로부터 혜택 중단
- ③ 복수세제혜택 제한
 - ✓ 연결납세제도 참여자
 - ✓ 경제특구/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
 - ✓ 지역투자프로젝트 참여자
 -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 ✓ 특별세제혜택 수혜자

V. 특별투자계약 2.0 주요 조건 및 1.0과의 차이



비세제적
장려대책

SPIC 1.0

- ① 총리령(제719호)이 규정한 현지화 요건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
- ② 일부 분야에 대한 정부조달 허용
→ 총리령(제719호)이 규정한 현지화 요건 준수 시
- ③ 정부조달 참여 시 단독 공급자 지위 부여
→ 투자액 30억 루블 이상 조건
- ④ 분야별 지원대책 → 보조금, 국가지식재산권 사용권 등
- ⑤ 입찰 미실시 조건의 국유지 임대차

SPIC 2.0

- ① 투자자의 경제활동 안정적인 여건 보장
- ② 정부지원비용이 투자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장려대책 중단
- ③ SPIC 체결 시점에 투자자에 대한 외국의 일방적인 제재 시 제재기간에 상응한 SPIC 계약기간 연장

V. 특별투자계약 2.0 주요 조건 및 1.0과의 차이

○ 시사점

장점

- ✓ SPIC 2.0 하에서 최저 투자금액 폐지
- ✓ 투자기간 최대 20년까지로 연장
- ✓ 법인세 감면을 위한 개별 수입지출 회계처리 허용

단점

- ✓ 현재까지 하위규정 미비 & 절차적 불확실성 존재
- ✓ 정부지원비용이 SPIC 투자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장려대책 중단
- ✓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절차 결과에 의해서만 SPIC 계약 체결 가능

VI.

관련 입법 동향

VI. 관련 입법 동향

- 프로젝트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рядка заключения, изменения, расторжения специаль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контрактов» (<https://regulation.gov.ru/projects#npa=94297>);
- 특별투자계약 체결, 변경, 해지 절차 승인에 관한 총리령안 (<https://regulation.gov.ru/projects#npa=94297>)
- 프로젝트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требований к структуре, содержанию, к порядку подготовки сводного отчета о результата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реализуемых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пециальными инвестиционными контрактами» (<https://regulation.gov.ru/projects#npa=94314>);
- 특별투자계약에 따라 이행되는 투자프로젝트 결과보고서 구성, 내용 및 준비 절차 요건 승인에 관한 총리령안 (<https://regulation.gov.ru/projects#npa=94314>)
- 프로젝트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рядка контроля за выполнением инвесторами обязательств по специальным инвестиционным контрактам и форм отчетов о выполнении указан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https://regulation.gov.ru/projects#npa=94312>);
- 투자자들의 특별투자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 절차 및 해당 의무 이행 보고서 서식 승인에 관한 총리령안 (<https://regulation.gov.ru/projects#npa=94312>)
- 프로젝트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рядка ведения реестра специаль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контрактов и состава сведений, включаемых в реестр специаль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контрактов, в том числе порядка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для ее включения в реестр специаль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контрактов, и о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 силу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4 мая 2017 г. № 623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и ведения перечня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финансов, реализация которых дает право субъектам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сфер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получение до 2025 года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в виде льгот по налогам и сбора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о налогах и сборах» (<https://regulation.gov.ru/projects#npa=94300>);
- 특별투자계약 명부 반영을 위한 정보 제공 절차를 비롯한 특별투자계약 명부 작성 절차 및 특별투자계약 명부에 포함되는 정보 구성 승인 및 2017년 5월 24일자 투자프로젝트 목록 구성 및 작성 절차에 관한 총리령(제623호) 효력 상실 인정에 관한 총리령안 (<https://regulation.gov.ru/projects#npa=94300>)
- 프로젝트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6 июля 2015 г. № 708 «О специаль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контрактах для отдельных отрасл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https://regulation.gov.ru/projects#npa=94246>);
- 2015년 7월 16일자 일부 산업 분야를 위한 특별투자계약에 관한 총리령(제708호) 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https://regulation.gov.ru/projects#npa=94246>)
- 프로젝트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рядка формирования и актуализации перечня видов технологий, признаваемых совреме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в целях заключения специаль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контрактов» (<https://regulation.gov.ru/projects#npa=94242>);
- 특별투자계약 체결 목적의 첨단기술로 인정된 기술목록 작성 및 시행 절차 승인에 관한 총리령안 (<https://regulation.gov.ru/projects#npa=94242>)
- 프로젝트 приказа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формы предложения инвестора о заключ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онтракта» (<https://regulation.gov.ru/projects#npa=95094>).
- 투자자의 특별투자계약 체결 제안서 서식 승인에 관한 러시아 산업통상부령안 (<https://regulation.gov.ru/projects#npa=95094>)

VII.

업무 Track Record

SPIC 관련 자문

- 한국 식품기업을 대리하여 SPIC에 따른 투자 및 건설 관련 법률자문 제공
- 러시아 공기업의 자회사 V社를 대리하여 SPIC에 따른 투자 이행 및 현지화 관련 법률자문 제공
- 러시아 자원기업(N社)을 위하여 SPIC 및 전자무형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 러시아 에너지기업(S社)를 위하여 SPIC 및 화학플랜트 프로젝트 관련 법률자문 제공
- 러시아 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SPIC 및 석유화학 프로젝트 관련 법률자문 제공
- 오스트리아 T社를 대리하여 SPIC 및 기술프로세스 관련 법률자문 제공

현지법인(지사/대표사무소) 설립/운영 관련 자문

- 한국 자산운용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보험 관련 자문
- 대상(주)를 대리하여 러시아 대표사무소 설립 자문
- SK건설을 대리하여 러시아 현지법인의 자본금 감자 및 법인 청산 업무 수행
- 삼성화재를 대리하여 러시아역외보험규정 관련 자문
- 삼성탈레스를 대리하여 러시아 노동법 및 근로계약 해지 관련 자문
- 코오롱을 대리하여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내 합작법인 참여 관련 자문
- 대상(주)를 대리하여 러시아 식품생산 합작법인 설립 관련 자문
- 포스코 A&C를 대리하여 러시아 모듈러 사업 관련 합작법인 설립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자문
- 한국서부발전을 대리하여 싱가포르 지주회사(합작법인) 설립 및 러시아 현지 지사 설립 자문
-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러시아 투자 위한 PEF 설립 및 네덜란드 지주회사 설립 자문
- KT를 대리하여 러시아 교통카드사업 관련 법인 설립 및 교통카드 설비 투자 · 운영, 청산 관련 자문
- 코오롱을 대리하여 카자흐스탄 국영기업과 합작기업 설립 및 지분 인수, 역외지주회사 설립, 합작투자 자문
- 성우하이텍(주)를 대리하여 우즈베키스탄 자동차부품 제조 합작기업 설립 자문
- 포스코를 대리하여 러시아 법인 및 지점 설립 자문
-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러시아 지사 설립 및 건설면허 취득 자문
- GS칼텍스를 대리하여 러시아 대표사무소 설립 관련 자문
- Orion International Europe, LLC를 대리하여 러시아 법률 관련 자문

인수합병(M&A) 관련 자문

- 포스코대우를 대리하여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운영회사 인수 자문
- KT를 대리하여 몽골텔레콤 지분 매각 자문
-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리하여 Put Option 행사 및 지분양수도계약 체결 자문
-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딧 은행(KB국민은행 자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소재 'BCC-Moscow Bank LLC' 지분 매각 자문
- 국내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은행 인수 자문
- 국내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우즈베키스탄 보험회사 인수 자문
- 국내 철강회사를 대리하여 우크라이나 철강기업 인수 자문

자원 · 에너지 관련 자문

- 한국서부발전을 대리하여 러시아 석탄생산기업 인수를 위한 법률실사 및 관련 자문
- 대우인터내셔널을 대리하여 러시아 시베리아 삼림투자 관련 자문
- 동화기업을 대리하여 러시아 극동 소재 목재기업과의 계약 관련 자문
- 한국투자증권의 사모펀드를 대리하여 러시아 극동 소재 석탄기업 인수 및 운영 자문
-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러시아 사할린 석탄광구 입찰 참여 자문
- 산업은행을 대리하여 카자흐스탄 유전광구에 대한 PF 및 담보권 설정 자문
- 러시아 가스프롬의 자회사인 'Gazprom mining shelf Yuzhno-Sakhalinsk' LLC를 대리하여 시추 장비 회수 관련 자문

건설 · 부동산 관련 자문

- 삼성물산을 대리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스프롬 본사 초고층빌딩 러시아 내 설계 및 CM 관련 법률자문
- 계룡건설을 대리하여 러시아 건축 및 부동산 개발 관련 법률자문
- 한국 자산운용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내 주상복합시설 부지 소유권 분쟁 관련 자문
- 한국 설계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관련 자문
- 한국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극장 건설 프로젝트 하도급계약 관련 자문
- 호텔롯데를 대리하여 러시아 호텔운영계약 체결 관련 이슈 검토
- 유니베라의 러시아 현지법인을 대리하여 부동산 실사 및 관련 자문
- 삼성물산을 대리하여 러시아 건설업/설계업 자율규제단체가입(SRO) 및 면허 취득 관련 자문
- 포스코 및 포스코 A&C를 대리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작성 및 검토
- 칸서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를 대리하여 러시아 극동 소재 골프장 및 호텔 건축 프로젝트 자문
- 메리트자산운용을 대리하여 카자흐스탄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한 실사 및 관련 자문
-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러시아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자문
- 한국무역공사(K-Sure)를 대리하여 우즈베키스탄 무역보험 관련 분쟁 자문
- 코오롱과 우즈베키스탄 국영기업과 합작으로 설립된 기업을 대리하여 플랜트 계약 검토 및 수정

금융, 소송 관련 자문

- KG이니시스를 대리하여 러시아 BAK와의 마스터 리스 계약 체결 자문
- KEB RUS, LLC를 대리하여 러시아 중앙은행 규제 관련 자문
- 계룡건설을 대리하여 러시아 하자보수 소송 수행
- Lotte Confectionery Rus, LLC를 대리하여 분쟁 리스크 관련 자문
- Lotte Europe Investment B.V.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수행
- TMAX Rus, LLC를 대리하여 법인 임대차계약 분쟁 관련 자문
- Hankook Tire Rus, LLC를 대리하여 전시회참가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 수행

청산, 노동 관련 자문

- 카자흐스탄 BCC은행을 대리하여 우크라이나 지사 청산 업무 수행
- KT를 대리하여 러시아 모스크바 대표사무소 폐쇄 관련 업무 수행
- POSCO RUS, LLC를 대리하여 법인 청산 업무 수행
- IRE BO, LLC를 대리하여 지분 정리 관련 자문
- 대한전선 러시아 대표사무소의 노동 관련 분쟁 전 법률자문
- 한화시스템을 대리하여 러시아 대표사무소 인력 관련 법률자문
- Orion International Europe, LLC를 대리하여 노무 이슈 관련 법률자문

기술 라이선스 및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 (주)에스원을 대리하여 디바이스 개발/판매 관련 자문
- CJ 4DX를 대리하여 러시아 극장운영회사와의 기술 라이선스 관련 자문
- 네오위즈게임즈를 대리하여 러시아 퍼블리싱 회사와의 라이선스 관련 자문
- 영화금속을 대리하여 우즈베키스탄 공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 관련 자문

공공기관 및 연구 관련

- 한국무역공사(K-Sure)를 대리하여 러시아 보험사고(다수) 건에 대한 법률 자문
- 한국무역공사(K-Sure)를 대리하여 몽골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미수채권 회수방안 관련 자문
- 기획재정부의 의뢰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진하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관련 자문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법률지원 업무
- 한국법제연구원, '러시아의 금융위기 출구전략' 용역 수행
- 법제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개발 법제연구' 용역 수행
- 법제처, '러시아연방에서의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연구' 용역 수행

JIPYONG

감사합니다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